#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3누52430]

# 【전문】

【원 고】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변론종결】2014. 11. 21.

# 【주문】

### ]

- 1.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케이티,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원고', '케이티', '롯데'라 한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통신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 나. SMRT Mall 구축사업 및 입찰 진행 방식

SMRT Mall(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구축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이하 '서울도철'이라 한다)가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 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 및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시철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트몰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

- 피고는 2013.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와 케이티는 주식회사 퍼프컴(이하 '퍼프컴'이라 한다)과 함께 퍼프컴 컨소시엄(주3)을 구성하여 서울도철이 발주한 2008. 7. 7.자 입찰 및 2008. 10. 31.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이하 '엔코아'라 한다)를 매개체로 삼아 롯데와 사이에 퍼프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하고 롯데를 탈락자(들러리)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퍼프컴 컨소시엄

#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케이티,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원고', '케이티', '롯데'라 한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통신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SMRT Mall 구축사업 및 입찰 진행 방식

SMRT Mall(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구축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이하 '서울도철'이라 한다)가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고 및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시철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트몰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였다.

원고와 케이티는 주식회사 퍼프컴(이하 '퍼프컴'이라 한다)과 함께 퍼프컴 컨소시엄(주3)을 구성하여 서울도철이 발주한 2008. 7. 7.자 입찰 및 2008. 10. 31.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이하 '엔코아'라 한다)를 매개체로 삼아 롯데와 사이에 퍼프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하고 롯데를 탈락자(들러리)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퍼프컴 컨소시엄

#### [이유]

####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케이티,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원고', '케이티', '롯데'라 한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통신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SMRT Mall 구축사업 및 입찰 진행 방식

SMRT Mall(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구축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이하 '서울도철'이라 한다)가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고 및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시철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트몰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

- 피고는 2013.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와 케이티는 주식회사 퍼프컴(이하 '퍼프컴'이라 한다)과 함께 퍼프컴 컨소시엄(주3)을 구성하여 서울도철이 발주한 2008. 7. 7.자 입찰 및 2008. 10. 31.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이하 '엔코아'라 한다)를 매개체로 삼아 롯데와 사이에 퍼프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하고 롯데를 탈락자(들러리)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퍼프컴 컨소시엄